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해자 유가족의 연대 권리 보장 등〉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7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9.
3. 회부연월일 : 2024. 9.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프랑스 테러·재난사고 유가족 연합 “펜박(LA FENVAC)”은 1994년에 조직된 단체로서, 80년대와 90년대에 발생한 테러·재난 유가족들이 결성했음. 펜박은 프랑스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으며, 재난으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소통하며 지금까지도 각종 재난 및 사고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압사사

고로 인하여 159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음. 그러나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 단체가 활동하기 어려웠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가족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66조제5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 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대상에 유가족을 추가하며 유가족 모임에 대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6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④ (생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현행	개정안
으로 피해를 입은 <u>사람</u>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u>활동</u>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⑦ (생략)	-----<u>사람 및 그 유가족</u>----- -----<u>활동 및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모임</u>-----. ----- ----- ----- ⑥·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가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에게도 적용한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 등을 규정¹⁾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²⁾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는 지원은 기본적으로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 및 피해보상 등을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지원도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피해자 유가족들의 연대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유가족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 대한 상담활동도 지원하는 한편, 부칙에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재난으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 대한 적용례를 둬으로써 법 시행 당시 피해복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유가족의 권리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됨.

[참고: 모임 지원에 관한 유사 입법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입법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숙박·대기공간 제공, 법률·심리 상담, 설명회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 및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위기가족긴급지원’ 제도에 관하여 규정³⁾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유가족 모임에 한정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

3)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2.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정서지원
3.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제2항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심리·정서지원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④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